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인쇄하여 의원에게”를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전송하고 인쇄하여”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본회의 안건 십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배부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3조 제1항중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를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를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로 하며, 동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

제44조의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11호중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중 “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재 또는 회의록 시디롬이 배부된 날부터”를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로 한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0조 제1항중 “서면으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인쇄하여”를 “전자문서와 인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②(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9조 【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7조 【안전심의】 ①~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②(현행과 같음)</p> <p>제19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전송하고 인쇄하여 ----- ----- ----- -----.</p> <p>제27조 【안전심의】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본회의 안전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배부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발언의 허가】 ①~③ (생략) <u>〈신설〉</u>	제31조 【발언의 허가】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u>
제43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u>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u> 가부를 결정한다. <u>〈신설〉</u>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u>의결이 있을 때에는</u>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 ④ (생략)	제43조 【표결방법】 <u>①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 .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u> <u>② -----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 .</u> <u>③ ~ ④ (현행과 같음)</u>
제44조 【투표절차】 ① ~④ (생략)	제44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 【회의록】 ① (생략) 1.~10. (생략) <u>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u> 12.~14. (생략) <u>② (생략)</u>	제46조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u>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u> 12.~14. (현행과 같음) <u>② (현행과 같음)</u>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p> <p>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재 또는 회의록 시디롬이 배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p> <p>②(생략)</p>	<p>제48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p> <p>① ----- ----- <u>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u>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54조 【위원회의 심사】</p> <p>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54조 【위원회의 심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3일 전 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6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p> <p>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u>인쇄하여</u>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6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p> <p>①----- ----- <u>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u>.</p> <p>②(현행과 같음)</p> <p>③ ----- ----- <u>전자문서와</u> <u>인쇄하여 -----</u>.</p>